

## 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### 2. 개정 이유

- 읍·면·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
  - 위임사무 신설 : 1건
    -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
  - 위임사무 삭제 : 4건
    - 의료급여증 반납, 소하천,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
  -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: 1건
    -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
  - 근거법령 변경 : 4건
    - 「농지법」, 「공유수면법」, 「옥외물광고법」 법령 현행화
  - 용어 현행화 : 1건
    - 「농지법」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(농지원부 → 농지대장)
  - 수임기관 변경 : 1건
    - 「농지법」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·면 제외

#### 4. 개정조례안 : 별 첨

-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8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 · 성명 · 생년월일 · 연락 전화번호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조직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(우 10932)
- 전화 : 031)940-8606 / Fax 031)940-4109

##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개정안 내용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|     |     |